

산업재산권 判例要覽(特許)

〈前號에서 계속〉

제177조(還送) ① 抗告審判에서 拒絕査定 또는 審判의 審決을 破棄할 경우에는 거절상정에 대한 항고심판에 있어서는 심사에, 심판의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에 있어서는 심판에 불일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결에 있어서 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을 기속한다.

抗告審判에서 한 원심결을 파훼하고 심판에 붙이는 심결에 대한 상고의 적부

■ 무릇 상고는 종국판결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음은 민사소송법 제392조의 정한 바로서 抗訴審의 還送判決은 중간판결에 불과하고 종국판결이 아니라 함은 본원의 판례인 바 특허법의 항고심판에서 특허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결을 破棄하고 사건을 심판에 붙이는 심결은 결국 그 사건에 대하여 항고심판의 종국적인 심결이 있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만큼 그 심결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고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 63. 5. 30, 63후10).

審決이 破棄된 경우 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에 기속을 받는 범위

■ 특허법 제135조에 의하면 抗告審判에서 審判의 審決이 破棄되어 다시 심결을 함에 있어서는 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에 霸束을 받게 되어 있고 이 사건에 있어 審判請求인이 출원한 내수성 안전성냥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 제1심 심결에서 拒絕査定이 되었다가 抗告가 되

고, 抗告審判에서 위의 거절사정이 파기되었는데도 다시 이를 환송받은 제1심에서는 거절사정을 하고 다시 항고되었으나 항고심에서 前抗告審 결과와는 달리 항고를 기각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일응은 제1심이 破棄還送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원심 또한 위의 결과를 그대로 용인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원심 결과 제1심의 심결이유를 종합 고찰하면 원심이 심판청구인의 出願發明이 (1) 합성수지로써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효과를 내는 점과 (2) 나무에 니트로세루로즈 레키를 도장하여, 내수성을 부여하는 기술 (3) 제2 인산암모늄을 첨가하여 낙하를 방지하는 기술 등은 모두가 일본의 특허공보(소화 49년 제21043호)와 화학대사전에 기재된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특허법 제6조 제2항에 따른바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容易하게 發明할 수 있는 신규성 없는 것이라 설시하였으며, 위의 설시는 전에 과시환송한 심결 이유에서 심판청구인의 출원에 속하는 발명이 합성수지 피막가공을 한데 반하여 위에 나온 특허공보에 기재된 성냥 축에 투약을 부착하여 합성수지액으로 표면처리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 양 설시 이유에 상이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파기 이후의 원심이나 제1심 심결에서는 그 이전의 심결시에 인용참증으로 제출된 바 없는 화학대사전 등의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설시이유와 채택한 증거인 인용참증에 많은 차이가 있는 한 결코 원심이 전에 한 파기환송이 이유에 기속받지 아니하여도 특허법 제135조

위반이 있다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 없다(대법 80. 2. 12, 79후87)

還送審決後의 特허청 항고심판소의 심리절차

■ 특허청에서 하는 無效審判과 査定 또는 審判에 대한 抗告審判은 원칙적으로 口頭審理에 의하여야 하고, 證據調査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며, 대법원에서의 破棄還送判決의 기본이 된 이유는 특허청을 霸束하므로, 대법원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과기환송 판결을 한 이상 환송후의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두심리를 행하여 과기 이유가 된 부분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심리방식에 의할 뿐더러 민사소송법에 의한 適式의 증거조사도 하지 않은 채 환송전의 원심결과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면 심리절차의 위법이 있는 외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한 위법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 85. 3. 12, 84후61).

審判請求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却下한 항고심판소의 심결에 대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의 유무(적극)

■ (1)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審判請求人の 이 사건 權利範圍確認審判請求를 이유 없다 하여 배척한 제1심결을 과기하고 등록된 상호간의 권리범위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에 들어감이 없이 이 사건 審判請求를 却下하는 審決을 하였는바, 이 抗告審決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은 不服을 하지 아니하고 피심판청구인만이 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위와 같이 審判請求가 부적법함은 이유로 却下한 抗告審判所의 審決은 심판청구인의 청구가 이유없다 하여 그 청구 불성립의 본안 심결을 구하고 있는 피심판 청구인에게는 불이익한 심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심판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피심판 청구인의 이 사건 상고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심판은 등록 제25162호 실용신안이 등록용 제15188호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느냐 아니하느냐의 심판인바, 실용신안의 권리범위 확인은 미등록된 실용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등록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경우 등록 제25162호 실용신안이 등록 제15188호 실용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하여도 전자의 실용신안이 후자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함은 곧 전자의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 이어서 먼저 그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겠으니 결국 등록 권리 사이의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청구의 이유는 양자의 기술고안이 상이하다고 함에 있음이 명백한 바, 이러한 소극적 확인 심판청구는 만일 인용된다면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의 등록 실용신안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정하는 것 뿐이고 이로 말미암아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권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 85. 4. 23, 84후 19).

제8장 再審

제178(再審의請求)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

■ 확정된 항고심판의 심결과 재심의 청구 : 특허법 제6장 再審의 規定을 보면 확정된 抗告審判의 審決에 대하여도 재심의 청구로서 不服을 申請할 수 있다 하였으므로 「대법원의 확정 심판에 대하여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재심을 청구한 본건은 특허국 항고 심판부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再審請求를 却下한 원심 결은 특허법 제6장 재심에 관한 규정을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 63. 10. 10, 63후4).

■ 審判請求人은 1965. 6. 18 실용신안등록출원 제1367호로서 「철도 차량용 추수를 出願하였다가 拒絕査定을 받고 不服하여 1966. 7. 6 抗告審判請求(1966 항고심판 제44호)를 하였다가 1967. 3. 16 그 신청이 성립할 수 없다는 심결을 받고 이 심결은 확정되었다 한다. 그리하여 심판청구인은 위 항고심판의 확정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실용신안법 제28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면 拒絕査定의 확정된 항고심판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논지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사건의 종류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심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론을 전개하고 있지만 채용할 수 없다(대법 67. 9. 5, 67후22).

■ 先登錄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無效審判을 받은 상표가 그후 선등록된 상표가 다시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앞서 한 무효심판은 재심 사유로 할 수 있다 : 원판결에 의하면 어느 상표가 상표법 5조에 의하여 등록할 수 없는 상표라 할지라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심판에 의하여서만 무효가 되는 것이며 심판에 의하여 무효라고 선언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고 해석함이 상표법 24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므로 審判請求人の 引用商標(參仁丹)가 소론과 같이 상표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無효라

고 확정된 바 없으니 被審判請求人の 登錄商標 제5736호(參精仁丹)가 선등록된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 제3886호(參人丹)에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 무효를 선언한 원심 심결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하여 上告棄却의 판결을 하였음이 분명하고 선등록되었던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 제3886호(參仁丹)는 그뒤 본원 66. 12. 27, 66후7 판결에 의하여 그 기본 요부는(參仁丹)이라는 문자에 있는데 參이라는 문자는 상품의 성질만을 설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약명으로 보통명사화되어 있는 것이어서 特別顯著性이 없는 것이고 仁丹이라는 문자는 구향제의 보통명사로 인식된 외국의 상표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약의 명칭으로 호칭됨이 현저한 사실이므로 위 상표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이라 하여 그 無效審決이 확정되었음이 논지가 들고 있는 그 판결이유에 비추어 분명한 바, 위와 같은 상표법 24조에 의한 등록상표 무효심판은 같은 법 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62조의 규정에 따라 소급적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등록상표 제3886호의 선등록처분을 판결의 기초로 하였음이 분명한 원판결에는 재심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422조 1항 8호에 해당하는 再審事由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와 이 사건 항고심 심결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의 제5736호도 그 상표의 기본 요부가 되는 것은(參精仁丹)이라고 호칭되는데 있음이 분명한 바 이 상표 역시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 제3886호(參仁丹)가 위에서 본 본원 66. 12. 27, 66후7 판결로서 무효확정된 것과 같은 이유로 특별현저성이 없는 무효의 등록상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 즉 그렇다면 이유야 다를 망정 그 무효를 선언한 항고심 심결을 유지한 원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再審請求의 訴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대법 68. 4. 16, 67후4).

■ 구특허법에는 민사소송법 제430조의 준용규

정이 없으므로 동법이 적용되는 본 건에서 동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사유로 再審查 請求가 있고 동 再審事由가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抗告審判의 審決이 이유 있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동 심결을 파훼하고 다시 抗訴審判의 審決을 하여야 한다(대법 77. 5. 10. 76후25).

■ 실용신안법 제29조, 특허법 제13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판단유탈은 당사자가 적법히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판단을 표시한 경우에는 설령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로는 볼 수 없다(대법 87. 7. 21, 87후55).

제 180조(再審請求의 기간) ① 당사자는 審決 확정후 再審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재심청구인은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 심결 확정후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기산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당해 심결 이전에 행하여진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건 再審請求의 對象이 된 確定審決은 1966. 9. 9에 심결이 있은 후 그 심결에 대한 상고로 인하여 본 원에서 1967. 6. 27 上告棄却의 판결이 있었는바 그 심결에 대하여 1967.

8. 3 재심청구인으로부터 재심청구가 있었고 상표법 제2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29조에 의하면 재심은 당사자가 不服의 이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이를 청구 할 수 있고 심결확정 전에 당사자가 불복의 이유를 알았을 때에는 30일의 기간은 심결이 확정된 날의 익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확정심결이 본건 재심청구인인 抗告審判 被請求人 代理人에게 송달된 것은 1966. 9. 15임이 일건기록상 명백하여 재심청구인이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 위 심결의 판단 유탈이라는 사유는 그 심결에 대한 上告棄却의 판결이 있은 1967. 6. 27 이전에 재심청구인이 알고 있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본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심결이 확정된 시기는 그 심결에 대한 상고기각의 판결 선고가 있는 때라 할 것이므로 본건 재심청구인은 본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심결의 확정전에 소론주장의 판단유탈이라는 不服理由를 알고 있은 것이 되어 본건에서의 재심청구기간은 위 상고기각의 판결선고가 있은 1967. 6. 27의 익일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이며 항고심판 피청구인인 재심청구인이 본건 재심청구를 한 날인 1967. 8. 3까지에는 위 기간일부터는 30일 이상이 경과하였음이 曆數上 명백하여 본건 재심청구는 위 법정기간을 경과한 후의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 후의 원심결이 위 재심청구를 법정기간 내의 청구임을 전제로 하였음을 위법한 것이어서 파훼를 면치 못하고 나아가 본건 再審請求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却下되어야 할 것이다(대법 68. 11. 26. 67후37).

■ 審決이 代理人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을 받을 당시에 그 심결에 判斷遺脫이 있는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대리인이 판단유탈 유무를 안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도 그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확정심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再審請求의 제기기간은 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에 안 것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대법 87. 7. 21, 87후 55).

제 185조(民事訴訟法의 準用) 민사소송법 제 429조 제1항의 규정은 再審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特許審判의 再審에 있어서 民事訴訟法 準用 : 본건 신청은 확정된 抗告審判의 審決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재심의 청구를 하고 그 再審請求가 係屬되는 법원이라 하여 재심으로 인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 바 특허법 제6장 재심에 관한 규정에 보면 민사 소송법 제473조는 준용되고 있지 않음에 비추어 본건 신청은 그 이유없다 하여 각하하기로 한다(대법 63. 9. 27, 63후1).

■ 원심결에 의하면 구특허법이 적용되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본건 재심의 대상이 되는 항고심판의 심결(1974년 항고심판 제333호, 제245호, 제247호)에 항고심판의 직을 떠난 남두용이 그 합의체의 구성원으로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구특허법 제12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본건 再審請求事由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30조의 준용규정이 없는 구특허법이 적용되는 본건에서는 위 抗告審判의 審決을 破毀하고 보전 제3925호 특허는 구특허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동법 제2조에 위배하여 특허된 것으로서 동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를 면치 못한다는 이유로 위 항고심판의 심결을 파훼함이 없이 본건 재심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구특허법에 있어서의 재심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은 파훼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

다(대법 77. 5. 10, 76후25).

제9장 訴 訟

제 186조(上告對象 등) ① 抗告審判의 審決을 받은 자 또는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却下決定을 받은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審決이나 決定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審決 또는 決定原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上告할 수 있다.

② 대법원 판결에서 審決 또는 決定破棄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청을 기속한다.

※ 상표 82, 86조(84후, 84후83, 84후84, 90후380) 참조.

※ 실용 35조 참조.

抗告審判의 審決文 更正決定에 不服하는 即時抗告를 却下한 특허국의 결정에 대한 대법원에의 再抗告의 적부

■ 기록상 본건이 특허국 1964년 항고심판 제98호 사건을 심결한 항고심판부가 그 심결문의 당사자 표시중 심판청구인 홍일제약주식회사라는 기재가 홍일약품주식회사의 오기였음을 발견하고 그 「製藥」을 「藥品」으로 更正한 決定에 대하여 不服하는 即時抗告를 却下한 특허국의 결정에 대한 再抗告임이 뚜렷한 바 특허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법원은 특허에 관한 항고심판의 심결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여 그 심결을 받은자가不服上告한 사건에 한하여 이를 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으로서는 위 再抗告(특허법 상에서도 전기 경정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를 수리할 근거조차 없는 바이니 이는 부적법할 것이다(대법 67. 12. 18, 67후1).

破棄還送 이유와 저해되는 심결의 위법여부

■ 1972. 2. 22자 당원의 원심결 과훼 판결의 두번째 이유는 전심은 本願發明과 先出願發明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다만 본원발명이 동물성유지와 明鑑을 가하지 않는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기술사상은 동일하여 본원발명은 선출원발명과 동일성 발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단에 대하여 당원은 그 판결 이유에서 위 두 발명은 각기 구성분이 다르고 제조방법도 판이한 것임이 뚜렷하여 양자는 서로 다른 두개의 발명이라고 하였으나 그 발명의 출원에 있어서도 하나로 볼 수 없으므로 양자가 동일하다는 판단은 위법이라는 이유로 원심결을 과훼하였던 것인바, 이 환송사건에 대한 원심의 심결이 유에 의하면 양자는 기술사상이 동일하고 발명의 구성이 같으므로 동일성의 발명이라고 과훼 전의 심결이유와 같고 당원의 위 과훼판결의 기본이 된 이유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였음이 명백하니 특허법 제136조 제3항에 위배된 심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은 할 것 없이 원심결은 과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대법 73. 9. 25, 73후5). ※ 실용 35조, 70후49 참조.

還送判決後의 特허청 항고심판소의 審理節次

■ 특허청에서 하는 無效審判과 査定 또는 審判에 대한 抗告審判은 원칙적으로 口頭審理에 의하여야 하고, 證據調査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며, 대법원에서의 과기환송 판결의 기본이 된 이유는 특허청을 羁束하므로 대법원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과기 환송 판결을 한 이상 환송후의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원칙적으로 口頭審理를 행하여 과기이유가 된 부분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심리 방식에 의한 뿐더러 민사소송법에 의한 適式의 증거조사도 하지 않은 채 환송전의 원심결과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면 심리절차의 위법이 있는 외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한 위법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 85. 3. 12, 84후61).

■ 대법원 판결에서 審決破棄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청을 羁束하는 것인바, 이 경우의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과기의 이유가 된 원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점에 있어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羁束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한다(대법 85. 7. 23, 84후84) ※ 상표 86조 참조

특허법 제186조 제1항 등의 違憲提請

■ 특허법 제186조 제1항 및 상표법 제86조 제2항(특허법 제186조 제1항 준용부분)의 규정이 헌법상의 3權分立의 原則과 司法權은 法院에 屬한다는 司法國家主義에 위배되고, 국민의法官에 의한 裁判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는 상당한 理由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主文 : 위 사건에 관한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상표법 제186조 제2항의 違憲與否에 관한 裁判을 提請한다) ※ 사건 90후 1871, 1888, 1895, 1901, 1918 상표등록취소관련(대법 91. 12. 23, 91쿠2 : 특별신청사건). <♣>

이 글은 도서출판 특허문화가 발간한 〈判例要覽〉의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법 조문에 따른 대법원판례(1961년부터 1991년)를 特許, 實用新案, 意匠, 商標의 순으로 게재하는 것임. 〈편집자 주〉